대학원 제약산업학과 내규

2013. 8. 21. 제정
2014. 6. 20. 개정
2016. 2. 3. 개정
2016. 7. 25. 개정
2017. 12. 20. 개정
2021. 8. 27.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12. 06. 개정
2024. 4. 03. 개정
2025. 8. 21. 개정
2026. 7. 07. 개정

제 1 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① 201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본 내규를 적용한다.

② 제 3 조 (대학원 석·박사과정 교과과정) 2항과 제 12 조 (장학금 지급) 4항은 2016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제 2 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의 배점기준은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이 동일하고, 총 100점 중에서 서류전형 50점, 구술면접 50점으로 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학과전형	석사	박사 및 통합
서류전형(50)	학업성취도(10) 연구/학업 계획(20) 추천 및 종합평가(20)	석사와 동일
구술면접(50)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30) 지원동기 및 태도(20)	석사와 동일

② 전형위원은 학과장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3인, 박사학위과정 3인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그룹으로 나누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조 (대학원 석 · 박사과정 교과과정)

① 제약산업학과의 핵심과목[1]은 아래 9과목과 지도교수님의 개설과목, 약학과 개설 교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학수번호	과목명(국문/영문)	시간/학점	개설학기
G16654	의약품 제조관리 (GMP) I	3/3	1

1) 겸임교수 이상인 교수의 담당과목에 대하여 부여

G16816	의약품 경제성평가 방법론 Ⅰ	3/3	2
G17175	보험약가정책론	3/3	1
G16817	통계분석방법론 Ⅰ	3/3	1
G16653	신약개발론	3/3	1
G17259	제약산업개론	1.5/1.5	2
G16655	규제과학특론((구)의약품허가심사Ⅰ)	3/3	2
G16665	여성리더십세미나	3/3	2
G16656	Leadership & Communication	3/3	2

② 석사학위과정은 핵심과목 중 2과목 6학점 이상,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 9학점 이상을 수강한다. (개정 2021. 8. 27.)

제 4 조 (졸업이수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으로 한다.

제 5 조 (보충과목제도)

① 약학 관련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약학 관련학과 이외 다른 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출신학교성적 중 수강한 전공교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충과목을 부여한다.

제 6 조 (종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석사학위과정	핵심과목 중 1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1과목 선택
통합학위과정	핵심과목 중 2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1과목 선택
박사학위과정	핵심과목 중 1과목 선택 + 수강과목 중 2과목 선택

※ 수강과목 : 생명약학부, 약학과, 제약산업학과에서 수강한 과목 모두 인정함. 단, 핵심과목 중 여성리더십세미나, Leadership & Communication, 신약개발세미나및실습 과목은 종합시험 과목에서 제외한다.

※ 박사학위 과정 학생 중, 본교 제약산업학과에서 석사를 한 경우, 석사에서 수강한 과목 중 종합시험을 보지 않은 과목은 박사학위 종합시험에서 선택하여 응시 가능함.(학생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③ 시험일은 6월과 12월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시험일은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④ 합격점은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한다.

⑤ 50점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50점 미만의 경우 재시험 응시 자격이 없고, 졸업이 한 학기 연기된다.

⑥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로 변환하여 석사 학위를 받는 경우, 적어도 1학기 이전에 결정하고, 석사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는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지만 2023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대상자부터 석사과정생에 한하여 팀티칭 교과목을 예외로 타시험과목과 겹치게 출제가 가능함.

※ 팀티칭의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모든 담당교수가 출제하도록 함.

(개정 2026.07.07.)

제 7 조 (영어시험)

① 영어시험은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 원본 또는 사본을 4월말, 10월말에 학과로 제출하고, 영어성적표를 사본으로 보관할 경우 학과장이 원본대조 확인 후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영어시험의 합격기준은 TOEFL(CBT) 173점, TOEFL(IBT) 61점, TOEIC 585점, TEPS 468점, IELTS 5.5점으로 한다.

③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면 합격 처리한다.

제 8 조 (통합자격시험)

① 통합학위자격은 평균성적이 3.0이상이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구두발표로 자격을 심사한다.

② 시험일은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6월과 12월 중에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 핵심 교과목의 시험문제는 시험 해당 학기에 수업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 이전 학기에 수업을 담당한 교원이 시험문제를 낸다.

제 9 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

① 석사과정은 2학기 개시전에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2/3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 4/5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08.21.)

⑥ 논문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각 과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가. 석사과정

(1)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지도교수와 심사일 및 심사위원에 대한 상의를 거친 후,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12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제청서를 제출한다.

나. 박사과정

(1)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 심사통과 후 1 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 후 심사결과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최소 1년에 1번씩 학생을 포함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박사과정생의 졸업논문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한 후 학위청구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2)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이 결정되면,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1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5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제청서를 제출한다.

제 10 조 (졸업자격기준)

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전국 규모 이상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회 이상 포스터를 발표하고,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해야 한다.[2] (개정 2016. 7. 25)

②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1저자로 국내외 SCI(E)급 상위 15% 이내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상위 50% 이내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3]해야 한다. (개정 2016. 7. 25)

③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규제과학(비실험연구)“ 논문일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 (개정 2016. 7. 25) (개정 2022. 12. 29)

제 11 조 (학위수여)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본교 학위논문제출 규정 및 제약산

2)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회발표는 반드시 제1저자여야 하고 투고하는 논문은 공동저자도 인정한다.

3)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예정도 인정한다.

업학과 내규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약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3. 12. 06)

②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신에 대체 교과목 트랙 또는 대체 실적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요건을 만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취득요건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3. 12. 06)

가. 대체 실적 트랙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2) 수료 기준(24학점+보충 학점 이수 및 누계 평점 3.0이상)을 충족한 자

(3)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SCI(E)급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단, 지도교수가 저자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리뷰논문 불인정 함)
-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 게재 완료된 실적물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① 8월 졸업:당해 년도 1월1일~6월30일
② 2월 졸업:전년도 7월1일~12월31일

(5)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6) (1)~(5) 이외의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나. 대체 교과목 트랙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2) 수료 기준(24학점+보충 학점 이수 및 누계 평점 3.0이상)을 충족한 자

(3)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9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하고,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5)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자

(6) (1)~(5) 이외의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제 12조 (장학금 지급)

①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사업 지원 장학금 재원 (1단계 2016년 1월-2018년 12월 / 2단계 2019년 1월-2020년 12월)을 바탕으로 전일제 학생의 경우 등록금의 최대 100%까지, 부분제의 경우 최대 30%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② 전일제는 1학기 4월 1일, 2학기 10월 1일자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생 신분인 자이며 부분제는 1학기 4월 1일, 2학기 10월 1일자 현재 국내 중소 또는 중견 제약기업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7. 25)

③ 전일제로 제약산업학과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학기 중에 취업하여 부분제로

전환시 각각의 학기 기간(1학기 3월-8월, 2학기 9월-차년도 2월)에 대해 전환시점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4]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5)

④ 전일제로 제약산업학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약산업분야(제약 및 관련회사, 정부 유관기관, 협회 및 관련 연구소 등)로 진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6. 7. 25)

4) 예시: 1학기 장학금을 받은 후 6월에 취업할 시 3개월/6개월=50% 반환